

제4장 무역계약의 조건



제4장 무역계약조건

무역계약조건의 구성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약정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과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시의 구제조항 등에 관한 계약의 제조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주요조건에는 우선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정문언, 약인 등이다.

또한 계약물품 및 계약이행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품질, 수량, 가격조건, 포장, 선적, 보험,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을 포함하며,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구제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 무역계약조건

-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권리침해(infringements of patent)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곤란(hardship)

클레임(claim)

중재(arbitration)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통지(notice)

재판관할(jurisdictions)

준거법(governing law)

제4장 무역계약조건

1. 품질조건(quality terms)

● 품질의 결정방법

- 견본, 상표, 규격, 명세서에 의한 매매
- 표준품에 의한 매매
 - * 평균중등품질 Fair Average Quality (F.A.Q.) : 곡물류(농산물)
 - * 판매적격품질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 목재, 냉동어류
 - * 보통품질 Usual Standard Quality (U.S.Q.) : 원면거래

● 품질의 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곡물류(농산물) ; F.A.Q.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목재, 냉동어류 ; G.M.Q.

● 품질의 증명방법

- Surveyor' s Report

제4장 무역계약조건

2. 수량조건(quantity terms)

- 수량을 톤(ton)으로 할 경우 Long Ton (L/T), Short Ton (S/T), Metric Ton (M/T)을 구분하여 명시함

영국계 L/T : long ton = 1,016kgs = 2,240파운드(lbs)

미국계 S/T : short ton = 907kgs = 2,000파운드(1bs)

프랑스계 M/T : metric ton = 1,000kgs = 2,204파운드(1bs)

- 액체 물품의 경우 어떠한 gallon인가를 명시 함

영국 1 English gallon (imperial gallon) = 4.546 liters

미국 1 American gallon (wine gallon) = 3.7853 liters

제4장 무역계약조건

-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의 활용
 - 유류, 광물, 원단, 곡물과 같은 산물(bulk cargo)인 경우
금액, 수량 또는 단가 앞에 “약” 이라는 의미의 “about” 를 기재
→ 10% 과부족 용인 (UCP 600, 제30조 a항)

[약정 예] Nylon Taffeta : about 1,000 Yds (About 1,000 Yds of Nylon Taffeta)

Coal : about 2,000 M/T (About 2,000 Metric Tons of Coal)

제4장 무역계약조건

3. 가격조건(price terms)

● 매매가격의 산출

- 매매가격은 Incoterms® 2010에 규정된 물품의 인도장소, 매매상사자간의 비용분담, 수출입수속 등의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고려하여 산출됨
- Incoterms® 2010에서는 “국내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는 부제를 달아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시 이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확장함 (7차 개정부터)
- 현재 Incoterms® 2010에서는 11가지 정형거래규칙이 제공되고 있음(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6장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규칙에서 설명)
- * Incoterms® 2010은 국제상업회의소의 등록상표임 → FOB와 같은 정형거래 규칙을 표기할 경우 이를 반드시 병행 표기 하여야 함

제4장 무역계약조건

-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무역계약시 사용되는 통화는 안정성, 교환성 및 유동성이 있는 통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해당 통화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예] 달러화의 경우 \$로만 표기하지 말고 USD, CAD, AUD, SGD, HKD 등으로 어느 국가의 통화인지를 특정하여야 함

4. 선적조건(shipment terms)

- 선적(shipment)의 의미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수탁(taking in charge)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ISBP 681, Para. 79).

제4장 무역계약조건

- 선적시기의 약정
 - “to” , “until” , “till” , “from” , “between” 의 용어 사용시:
당해 일자가 포함
 - “before” , “after” 의 용어 사용시:
당해 일자 제외 [단,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from” , “after” 가 사용된 경우
당해일자 제외 (UCP 600, Article 3).
 - “prompt” , “immediately” , “as soon as possible” :
모호한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만약 사용시 은행은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CP 600, Article 3).
 - Shipment :
on or about November 20, 2010 → 지정일자(11월 20일)로부터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 11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간주 (UCP 600, Article 3).

제4장 무역계약조건

[선적조건 약정 예문]

Shipment Terms :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ontract.

- * 할부선적분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이행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도 무효가 됨 (UCP600, Article 32).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basis)에 의한 결제
 -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유리함
- 추심방식(Collection basis)에 의한 결제
 - 매수인에게는 유리하나 매도인에게는 불리함
- 송금방식(Remittance basis)에 의한 결제
 - 매수인에게는 유리하나 매도인에게는 불리함

제4장 무역계약조건

-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의 약정

[예 1] “Payment Terms :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issued in favor of Seoul Trading Co., Ltd., Seoul.”

[예 1]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의 약정

-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예] “Payment Terms : Under D/P at sight in U.S. Dollars.”

-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예] “Payment Terms : Under D/A at 30 days after in U.S. Dollars .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제4장 무역계약조건

-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의 약정
 -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 Wire Transfer
[예] “Payment Terms : Under T/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
[예] “Payment Terms : Under M/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제4장 무역계약조건

-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의 약정

-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 * 매도인(seller)에게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방식이 유리함 [선적전
사전송금조건/ 선적후 사후송금조건 명시]

[예] “Payment Terms : Under Banker's Check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예]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제4장 무역계약조건

6.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부보 목적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화보험을 부보 하여야 함**
- **CIF나 CIP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 매도인의 보험계약의무는 송장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과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중 ICC(C) 조건인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기본 의무임 → 물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ICC(C), ICC(B), ICC(A)의 신약관을 참조 예컨대, 유리그릇의 경우에는 ICC(C)에 “breakage” 를 추가하여 부보하여야 함**

제4장 무역계약조건

7. 포장조건(packaging terms)

- 포장(packaging)은 안전하고 취급하기 용이하면서 내구성이 있는 포장종류를 선택
- 계약시 매수인의 요청이 없으면 포장에 대한 선택권은 매도인에게 있음
- 화인(shipping marks)은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됨

8.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계약체결시에 미리 예기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조항 가운데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해당 불가항력사태 발생시 면책주장 가능
- 불가항력사태가 발생시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입증자료도 제시하여야 함

제4장 무역계약조건

9. 재판관할(jurisdiction)

-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하여 놓은 것이 재판관할임
- 계약에서 중재조항의 설정 또는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됨
- 중재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중재에 불일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에 의하게 됨
- 재판관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가 관계 당사국에서 유효한지, 선정된 법원이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출소권을 인정하는지 선정된 법원은 판결의 집행을 처리하기에 적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준거법(governing law)

- **준거법의 의의**

-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함
- 계약의 성립, 이행 및 종료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가를 지정하는 것임
- * 준거법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 지정된 준거법이 최우선 적용
- *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유효한 것이어야 함(법 선택이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